

소 장

원고 별지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박OO 이OO 황OO 이OO 김OO 오OO 문OO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3-12 장생빌딩 5층

우편번호 137-070

피고 1. 해양수산부장관

이OO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9

우편번호 120-013

2. 농림부장관

김OO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89번지

우편번호 427-020

공유수면매립 면허처분 취소 및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 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1991. 10. 17자로 농림수산부장관에 대하여 한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군, 김제군, 부안군 관내 19개 읍면동 지선의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지역의 공유수면 매립면허처분 및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원고들은 18세미만의 미성년자들과고, 농림수산부장관은 1991. 10. 17 농림수산부장관에 대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군, 김제군, 부안군 관내 19개 읍면동 지선의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 지역의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 처분을 하였으나 그후 피고들이 위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을 승계받은 행정청입니다.

2. 청구의 적격문제

가. 원고들 중 김정현 등의 31명은 전북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등 새만금간척 종합개발사

업지역 권내에 거주하는 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서울, 경기, 대전, 부산, 인천 등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입니다.

나. 피고는 1991. 10. 17자로 농림수산부장관에 대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군, 부안군 관내 19개 읍면동 지선의 새만금간척 종합개발 지역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을 실시하고 새만금 간척 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을 하여 현재까지 공사중에 있는바, 새만금 간척종합 개발계획에 의한 간척사업에 의한 간척사업(이하, '새만금간척사업'이라고 함)

군산시 비유도에서 야미도, 신시도를 거쳐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 이르는 총연장 33km의 방조제를 축조하고 총 40,100(약 1억 2천만평)에 이르는 만경강, 동진강하구의 갯벌과 바다를 매립하는 대공사입니다.

매립면적은 토지조성 2만 8천여 ha(약 8,500만평), 담수호 1만여 ha(3,600만평)로 이는 여의도의 140배에 이르는 광대한 면적입니다.

다. 이지역 갯벌은 북으로는 금강하구의 외해역에 해당되는 오식도, 비안도를 잇고 있으며 동으로는 만경강, 동진강 하구로부터 서쪽으로는 고군산 군도까지 이르고 북쪽 금강하구의 퇴적물과 중앙에 위치한 만경강, 동진강의 육상 퇴적물의 영향을 받아 갯벌이 잘 발달되었으며 강 하구는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백합조개의 생산이 전국에서 가장 育?곳이기도 하고 또한 봄, 가을에는 호주에서 시베리아로 이동하는 20,000마리 이상의 도요새 물떼새들의 중간 기착지로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곳으로 국내 최대의 물새류 도래지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을 포함한 대한민국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중의 하나입니다.

라.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인간환경회의(The UN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에서는 "인간은 품위있고 행복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속에서 자유, 평등, 그리고 적정수준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조건을 향유할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현세대 및 다음세대를 위해 환경보호개선을 엄숙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ECD)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은 가능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는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선언"을 채택하여 "개발의 권리는 개발과 환경에 대한 현세대와 차세대의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실현되어야 한다."(원칙3)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고 모두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세계 청년들의 독창

성, 이상 그리고 용기가 결지되어 범 세계적 동반자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원칙21)고 선언하고, Agend21 제 25장에서는 '청소년은 전세계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의사결정 및 프로그램실행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라'고 규정하고, 1997년 현세대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에 관한 '유네스코서언'에서는 '현세대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욕구와 관심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제1조) '현세대는 인간행동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지 않을 지구를 미래세대에서 양도할 책임이 있다.'(제4조) '미래세대가 지구 생태계의 풍요로움을 통하여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현세대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노력하며, 생존조건, 특히 환경의 질과 원상태를 본전해야 한다. 현세대는 미래세대를 위해 인간생활의 유지와발전에 필수적인 천연자원을 보전해야 한다. 현세대는 주요사업을 실행하기전에 그 결과가 미래세대에서 미칠 가능한 거로가를 고려해야 하다.' (제5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헌장초안'에서는 'gustoei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구의 풍부함과 아름다움을 수호한다. 지구를 보전하려는 노력이 가져오는 이익과 부문에 장기적인 국가 정책과 공동의 국제적 조치와의 결합을 통하여 확보되어야 할 천혜의 생태계입니다. 새만금 간척공사는 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오랜기간이 필요하고 또 완공되더라도 농업용지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를 결정한 현재의 기성세대보다는 다가오는 미래세대(원고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며 같은 공사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변화나 환경상 침해도 미래세대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즉 새만금 매립공사의 진정한 이해당사자는 공사효과를 직접적으로 받게되는 미래세대들이고 이러한 미래세대들(원고)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써 새만금갯벌에 대하여 경제적, 생태적, 육체적, 심미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며 앞서 언급한 각종 국제 협약과 국내 헌법 이하 관련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 처분에 및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 사업 시행인가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3. 새만금 간척사업의 미래세대 권리 (환경권)침해

가. 환경권에 대한 침해

- 헌법 제33조는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모든 국민의 환경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1991년 제정된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는 "자연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하게 이용되어야 한다."는 자연자원의 공익성과 그 이용에 있어서 미래세대를 고려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 "세대간 책임"과 "세대간 형평성"을 명시한 지속가능한 이념을 위한 반대

- 세계최대의 갯벌과괴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은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이 후, 지구의 생명과 인류의 위반되는 행위이며, "세대간 책임"과 "세대간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다. "공공신탁법리" 위반

- 새만금 갯벌의 파괴는 우리 후손들이 현세대에게 물려준 자연자원을 보전하여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공공신탁법리"에 위반됩니다.

라. 생물종 다양성 협약, 람사협약 등 미래세대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을 위반

- 만경강, 동진강 하구에 위치한 새만금 갯벌은 수만종이상의 생물종의 서식지로서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특히, 새만금 갯벌은 백합, 가무락, 갯지렁이, 게, 등 371종의 저서규조류와 조기, 웅어, 전어, 등 우리나라 서해안에 출현하는 어류의 76.9%의 서식지, 산란지, 치어의 서식지, 회유어류들의 이동통로입니다. 봄, 가을 도요 물떼새의 중간기착지로서 새들에게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며 20만종 이상의 새들이 새만금 갯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갯벌은 국제적으로 보호해야하는 멸종위기 종인 검은 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쇠청다리도요사촌, 붉은어깨도요 등의 서식지입니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생물종의 감소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마. 미래세대의 다양한 동, 식물계에 대한 권리, 풍요로운 자연에서 생활할 권리,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작, 변화되지 않은 자연유산을 향유할 권리를 침해

- 새만금 갯벌은 만경강, 금강하구의 퇴적물이 수만년 동안 쌓여 형성된 인간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이 총집결된 결정체입니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사업이 진행되면서 비유도, 선유도, 신시도, 북가력도, 야미도 등 고군산군도의 섬과, 만경강, 동진강의 흐름이 막히고, 신석기 시대부터 만들어진 서해 행태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새만금 갯벌이 위치한 변산반도는 후박나무의 북방한계선으로 한반도 생태계 구성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기념물인 후박나무군락, 광광나무군락, 미선나무의 주여 서식지입니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바다와 조화를 이루어 왔던 변산반도의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으며 이미 새만금 인근 150여개 이상의 산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동, 식물계에 대한 권리와 풍요로운 자연에서 생활할 권리 및 다양한 자연자원

을 확보할 미래세대의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바. 깨끗한 공기, 대기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들의 권리를 침해

- 생명과 조화의 땅 갯벌을 파괴하고 만들어지는 29,000ha의 땅은 농지, 공업단지, 관광단지, 도로 등으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미래세대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새만금 갯벌 대신 공장과 차량에서 내뿜어지는 매연과 콘크리트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 건강하고 풍요로운 물에 대한 미래세대들의 권리를 침해

- 새만금 갯벌은 서해바다와 만경강, 동진강이 만나는 기수대로서 해양과 육상생태계의 원활한 흐름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간척사업에 의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흘러오던 강의 흐름을 막음으로써 건강하고, 풍요한 물의 공급을 막아 심각한 물문제를 유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 한번 파괴되면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에 대해 현세대가 충분히 보전, 이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 새만금 간척공사가 완공될 경우 2만 ha의 갯벌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는 전북 전체갯벌의 90%에 이르는 면적이며, 갯벌은 한번 파괴되면 복수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자. 건강을 위협하거나 또는 감시하고 관리하는데 지나친 비용이 드는 전세대의 제조물과 사업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래세대의 권리를 침해

- 새만금 간척사업을 완공하는데 건설비만 3조원 이상이 투자되어야 하며, 내부개발비와 새만금 수질오염방지와 관리를 위해 투자되어야 하는 비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미래세대들에게 새만금 간척지와 새만금호의 관리, 유지를 위해 부담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차. 문화유산, 곧 전세대가 창조한 문화와 만날 미래세대의 권리에 대한 침해

- 새만금 갯벌은 철산 할머니가 바다를 지켰다는 전설이 담겨 철산앞바다와 황그어장, 깨끗한 바다로 알려진 고군산군도의 아름다운 섬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또한 새만금 갯벌이

형성된 주변은 변산 국립공원과 변산해수욕장, 개암사, 내소사, 선운사, 격포채석장 등 해안의 특성이 반영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촌문화를 기반으로 한 매항제, 풍어제 등 역사 대대로 이어져온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변산반도 문화유산의 훼손, 변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타. 미래세대의 자결권을 침해

-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서해안 갯벌의 중심자인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고, 변산반도의 문화유적이 훼손되고 바다와 어우러져 형성된 풍요로운 장연생태계가 파괴된다면 우리의 미래세대들의 보전, 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제한적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인간다운 생존을 할 수 있는 생활환경에 대한 미래세대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고 특히, 전세대가 의식적으로 야기한 물리적 사실로 인하여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관점과 자결을 제한하게 되는데 미래세대는 이를 감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4. 고유수면 매립법상의 면서 및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 사업 시행인가 처분취소 사유

가. 새만금 간척사업은 감사원이 사업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새만금 간척지구내부 토지이용계획이 비합리적으로 수립, 추진되거나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지연추진되어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고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미흡하여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예측되며 방조제 담면설계 및 공사계획 잘못으로 방조제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자에게 어업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감사결과 모두 79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하여 1998. 9. 25. 새만금 간척사업계획 등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하고 문제점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도록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하였습니다.

(1)사업계획분야

-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경제성분석 업무 및 사업계획변경 추진이 부적정하다는 판단하에 토지용도별 수요예측과 경제성분석을 다시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만일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환경영향평가제 실시 등 적법절차를 거쳐 변경추진 하도록 권고하고 사업계획을 부당변경 추진한데 대하여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 사업비 산정과 투자계획 및 사업관리의 부적정을 지적하여 소요사업비를 적기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매년 소요예산의 23.4% 내지 69.2%만 배정 집행됨에 따라 1998년과 2004년

에 완공예정이던 방조제공사 및 내부개발사업이 각각 2004년 및 2011년에 가셔야 완료되도록 늦게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실제대로 저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수자원 이용계획 및 조사의 부적정을 지적하여 새만금 담수호 관리수위와 제염계획을 재검토하고 유입수계별 수질과 수량을 감안한 수자운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고

- 사업지구지정의 불합리를 지적하여 고군산군도일원을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비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2)담수호 수질관리 분야

-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 부적정성을 지적하여 새만금 담수호 유역의 오염물질 발생량이나 환경기초시설의 처리가능 용량을 사실대로 평가하여 담수호의 수질을 정확히 예측 및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으 강구하도록 권고하였고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행 및 사후관리 부적정을 지적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요을 철저히 이행할것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도록 권고하고 환경영향평가이행 및 수질오염방지 대책 수립업무와 사후관리를 부당처리한 관련자는 인사자료 통보하였으며

- 새만금 담수호 수질보전대책 부적정을 지적하여 새만금 담수호의 목표수질지이 확보될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으며

-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부적정을 지적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제반대책을 수립하여 수질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새만금 유역의 수질보전

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3)사업진행분야

- 방조제 공사계획 및 부적정을 지적하여 안전도 부족하게 설계된 제4호 방조제 다면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고

- 방조제 축조공사 공구분할 및 자재수급계획 부적정을 지적하여 중복발주된 공가구간을 재조정하고 방조제 축조용 토사의 준설위치를 재검토하여 사업비를 아낄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 간척사업과 신항만 건설 관련사업 연계추진 미흡을 지적하여 방조제 건설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연계, 조정하여 사업비 낭비를 막고 배수갑문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4) 그외에 전라북도의 지역개발계획분야에 있어서 새만금 간척지원 사업소 조직구성 및 운영의 부적정과 내부종합개발계획 용역시행 및 용역시행 및 용역성과품 활용 부적정성을 지적하고 어업권보상업무 처리의 부적정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나. 감사원이 지적한 79건의 위법부당사항의 내용과 같이 새만금 간척사업은 하자 투성이에 1998년과 2004년에 완공예정이던 방조제공사 및 내부개발사업이 각각 2004년 및 2011년에 가서야 완료되도록 늦게 추진되고 예산이 당초보다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추가 요구되고 담수호 수질보전 대책이 미흡하여 오염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미래세대(원고)가 이용할 수 있는 갯벌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는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제2호의 매립공사가 매립면허를 받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같은조 제3호 예상하지 못한 사전변경으로 인하여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허취소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 처분의 취소사유가 된다 할 것입니다.

5. 갯벌의 생태경제적 가치

대한민국 서해안 갯벌은 캐나다 동부해안, 미국동부해안, 북해연안 및 아마존강 유역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바, 우리나라 갯벌의 ha당 어류생산성은 단위생산성으로 환산하면 700만원으로 추정되고 갯벌의 ha당 정화처리능력으로 환산하면 384만원의 가치를 가지며 어류서식지기능과 심미적 기능까지 합치면 ha당 약 2,025만원으로 추정되나 농업적 이용에 의한 미곡의 ha당 생산성은 610만원으로 나타나 갯벌보전이 농지이용보다 약 3.3배가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6. 취소소송 제소기간 문제

원고들은 18세미만의 미래세대들로 새만금간척사업을 시작한 1991년에는 9세 이하로 너무 어려서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줄도 몰랐거나 당시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권 매립면허처분 등이 있음을 알지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6. 결론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모두어 보면 이권 새만금간척사업은 현세대의 미래세대(원고)에 대한 명백한 환경권침해이고 경제성 또한 없는 사업이며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초 새만금간척사업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출발되었고 갯벌은 한번 파괴되며 복구할 수 없는 자산이며 새만금호는 '제2의 시화호'가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새만금갯벌은 미래세대가 경제적, 생태적, 육체적, 심미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몫으로 남겨놓아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